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. 6. 20 선고 2017가단2654 판결 [매매대금 잔금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8. 5. 23

판 결선고 2018. 6. 20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1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(1) 원고는 2007. 5. 23. C 외 2인에게 부산 강서구 D 답 5,088㎡ 외 11필지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를 65억 원에 매도하면서,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.

이에 따라 피고는 위 C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.(2)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1억 2,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,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매입한 부산 강서구 E 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용되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(3) 피고는 2007년 중순경 원고에게 2,700만 원, 위 피고 소유 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용된 2016. 12. 6. 2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(4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7,300만 원(1억 2,000만 원, 700만 원, 000만 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았다거나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1억 2,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,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양민호